

심 사 보 고 서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심사보고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41호
----------	-------

2016. 3. 15.(화)
정책복지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2월 24일
- 회부일자 : 2016년 2월 24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3월 4일

-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함승덕 충청도립대학 총장)

가. 제안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학운영 회계의 명칭 및 세입·세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 양성평등 기본법 및 부패영향평가에 근거하여 대학운영위원의 구성, 연임 제한, 이해충돌방지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학운영회계 사항 정비 :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제12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영함
- (제13조, 제14조) 대학회계 세입, 세출 규정
-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8조
 - (제4조) 위원회 15명 이내 구성, 특정 성의 10분의 6초과 금지
 - (제8조)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안건의 심의·의결·제척 대상 규정, 위원 위촉 해제의 경우 신설
- 특별회계 설치·운영 사항(특별회계 폐지 유예) : 제11조
 - (제11조) 미래관 증축 사업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
- 회계직 및 기구 명칭 변경 : 제23조, 제24조
 - 기금분임운용관 ⇒ 분임기금운용관, 사회교육원 ⇒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2016.1.1.)에 따라 충북도립대학의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회계의 명칭, 세입·세출 관련 사항 정비 및 기존 '대학운영 특별회계' 유예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4조(구성)는 대학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을 고려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 중 '교학과장'을 직제변경 등

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 제7조(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제11조의2는 현재 명시이월로 진행중인 '미래관 증축사업'에 한하여 사업종료 때까지(2016.10월 예정) '대학운영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회계'의 신설·운영 관련 조항 및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 또한,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분임운용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용어를 정정하였고, 제28조에서는 평생교육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 상위법령에 따라 대학운영 회계의 명칭 및 세입·세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및 '부패영향평가'에 근거하여 대학운영위원의 구성, 연임제한,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평생교육법」 부칙 제10조(경과조치)에 따라 2008.11.3.일자로 '충북도립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 개정·운영 중인 바, 도립대학 부설 기관의 기능 및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상위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고 본 조례안에 개정하는 점은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북도립대학 교학과장”을 “충북도립대학 소속 교직원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미래관 증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관 증축사업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운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잡수입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미래관 증축사업비로 한다.

제3장의 장 제목 “대학운영특별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설치운영) ① 대학운영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4.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인적경비
2.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 운영비
4. 자산적 경비
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기금분임운용관”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분임운용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장의 장 제목 및 제28조 중 “사회교육원”을 각각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 중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학회계가 승계한다.

② 2015년도 대학운영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중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관계법령

개정조문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4조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u>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이하생략)
제4조3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하부조직) ① 충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처, 기획협력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 11. 21, 2013. 4. 25, 2013. 12. 27> ② <u>교학처장 및 기획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개정 2013. 4. 25, 2013. 12. 27>
제9조2항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2】	담당자, 팀장, 처(국)장, 총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 <u>국립대학</u> "은 " <u>공립대학</u> "으로, " <u>국가</u> "는 " <u>지방자치단체</u> "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2조에 따른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립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u> ② <u>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u>

		<p><u>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u>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u> <p>③ <u>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 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u>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u>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u>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u>전형료</u> 4. <u>대학원의 논문심사료</u> 5. <u>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u> 6. <u>이월금</u> 7. <u>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8. <u>이자수입</u> 9. <u>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u> 10. <u>그 밖의 수입</u> <p>④ <u>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u></p> <p>⑤ <u>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u></p> <p>⑥ <u>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제6장 제28조	평생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u>사회교육법</u> 」에 따라 설치된 <u>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u>